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7. 7. 1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7년 7월 6일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)

가. 제안이유

- '98. 10. 1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통합으로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쇄되었고,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·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광장하게 됨으로써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우리 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남식)

- 의료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'98. 10. 1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통합으로 폐쇄되었고,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·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광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查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-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지소가 모두 폐소 되어 별도의 자치구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함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지소설치 운영
 - 1998년 10월 의료보험조합 해산으로 전면폐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: 생략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,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